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법제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5”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4”를 “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9”를 “217”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5</u>	<u>233</u>	-2
•	•	•	
•	•	•	
일반직 계	<u>234</u>	<u>232</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9</u>	<u>217</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9